

제276회 정례회
2008. 12. 23(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증인 불출석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산 업 경 제 위 원 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증인 불출석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2008. 12. 23(화)
제276회 정례회

1. 의안 개요

가. 제출자 : 산업경제위원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8년 12월 16일
- 회부일자 : 2008년 12월 16일

다. 상정일자

○ 제27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2008.12.16) 상정, 경과보고, 심사의결(원안가결)

2. 의결 요지

가. 의결 이유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한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중 괴산산업단지의 학생중앙군사학교 용지편입과 관련하여 괴산군수 임각수와 (주)진로 대표이사 윤종웅에 대해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불출석하여,

-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괴산군수 임각수와 (주)진로 대표이사 윤종웅이 정당한 이유없이 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요구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과태료 부과 요구내용

처분요구 대상자	위반내용	부과 근거	금 액	비 고
임 각 수 괴산군수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충청북도의회행정 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제10조제1항	200만원	2회 불참
윤종웅(주)진로 대표이사	"	"	100만원	1회 불참

3. 경과 보고

(산업경제전문위원 민 병 완)

-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2008행정사무감사계획 확정시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소관 괴산산업단지의 학생중앙군사학교 부지로의 편입과 관련, 실시계획 인가권이 있는 괴산군수 임각수와 사업시행자인 (주)진로 대표이사 윤종웅을 관계자로 판단하여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두 증인에 대하여 각각 출석을 통보하였으나,

- 괴산군수 임각수는 괴산군과 서울시 구로구간 자매결연계획을 이유로, (주)진로 대표이사 윤종웅은 중국 남부 수출시장 관련 해외출장을 이유로 참석이 불가능하여 당시 업무를 담당할 상무가 대리 출석한다는 회신을 해 옴.
- 이에 우리위원회에서는 감사대상인 괴산산업단지과 관련한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사전 일정조정 등 증인출석 노력을 경주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만 (주)진로 대표이사 윤종웅의 경우 중국 남부 수출시장 점검을 위한 해외출장계획 일정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다고 판단.

- 이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대상 업무의 중요성과 사실 확인 필요성을 위해 상기 2명의 증인에 대해 2차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 괴산군수 임각수는 괴산군 자체행사인 농업연구소 준공식 개최를 이유로, (주)진로 대표이사 윤종웅은 제품 "J" 출시에 따른 대외 거래처 행사주관 등을 이유로 참석이 불가능하며, 당시 업무를 담당할 상무가 대리 출석한다는 회신을 통보해 옴.
- 그러나, 괴산군수 임각수의 경우 괴산군 농업연구소 준공식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군 자체행사로 일정연기 또는 부단체장 참석이 가능한 사항이며,

- 또한 (주)진로 대표이사 윤종웅의 경우에도 신제품 “J” 출시 행사에 회사관계자의 대리 출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대외 거래처 행사 주관 등의 일정으로 불출석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출석과 관련한 엄정한 기준과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철저한 업무추진을 위해 불출석 증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음.

4. 의 결 결 과 : 원안가결

5. 의 견 요 지 : 없 음

6.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7. 첨부서류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증인 불출석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 관련법령 발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증인 불출석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한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중 괴산산업단지의 학생중앙군사학교 용지편입과 관련하여 괴산군수 임각수와 (주)진로 대표이사 윤종웅에 대해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불출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괴산군수 임각수와 (주)진로 대표이사 윤종웅이 정당한 이유없이 감사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유로 과태료 부과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과태료 부과 요구내용

처분요구 대상자	위반내용	부과 근거	금 액	비 고
임 각 수 괴산군수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충청북도의회행정 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200만원	2회 불참
윤종웅(주)진로 대표이사	"	"	100만원	1회 불참

○ 과태료 부과 사유 : 붙임 1

○ 기타 관련자료

- 관계법령 발췌 : 붙임 2
- 참고 자료 : 붙임 3

〈붙임 1〉

괴산군수 임각수의 1인 불출석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유

- 2008년 10월 14일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2008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확정하면서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소관인 괴산 산업단지의 학생중앙군사학교 부지로의 편입과 관련하여 실시계획 인가권이 있는 괴산군수 임각수와 사업시행자인 (주)진로 대표이사 윤종웅을 관계자로 판단하여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에서는 2008년 10월 30일 제1차 증인 출석 요구(공문번호 충청북도의회 의사담당관-2176)하였음.
- 그러나, 괴산군수 임각수는 2008년 10월 16일 확정된 괴산군 - 서울시 구로구간 자매결연계획을 이유로, 2008년 11월 19일 증인불출석을 통보(공문번호 괴산군 경제과-11056)해 왔고,
- (주)진로 대표이사 윤종웅은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중국 남부 수출시장 관련 해외출장을 사유로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2008년 11월 19일 증인불출석을 통보(공문번호 진로 총무-80)해오면서 당시 업무를 담당한 상무가 대리 출석한다는 회신을 해 왔음.
- 이에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 괴산군수 임각수의 경우 자매결연 행사는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사계획 결정 이전에 행사계획이 수립 되었다고는 하나,

- 자치단체의 모든 행사에 자치단체장이 참석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 결연행사에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참석이 필요한 시간은 결연식이 시작된 11시부터 최대 1시간 정도임을 감안하고
 -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1개국의 행정사무감사가 통상 10:30분에 시작되어 퇴근시간까지 진행됨을 고려할 때, 출석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참석이 가능함에도 불출석함은 의도적 불참으로 판단되며,
 - 특히, 증인자신이 감사대상인 괴산산업단지과 관련한 절차상 하자를 인정(별첨 11월 19일 기자회견 보도 참조)하면서도 사전 일정조정 등 증인출석 노력을 경주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 다만, (주)진로 대표이사 윤종웅의 경우 중국 남부 수출시장 점검을 위한 해외출장계획 일정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됨.
- 이에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업무의 중요성과 사실 확인 필요성을 놓고 토론한 결과 위 2명의 증인출석이 긴급하다는 판단아래, 2008년 11월 21일 경제통상국의 추가 감사를 의결하고 괴산군수 임각수와 사업시행자인 (주)진로 윤종웅 대표이사를 11월 28일 오후 2시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공문번호 충청북도의회 의사담당관-2430)하였으나,
- 괴산군수 임각수는 2008년 11월 13일 확정된 괴산군 자체행사인 농업연구소 준공식 개최를 이유로 11월 26일 불출석을 통보(공문번호 괴산군 경제과-11905)해왔고,

○ (주)진로 대표이사 윤종웅은 신제품 “J”출시에 따른 대외 거래처 행사주관 등을 이유로 참석이 불가능하며, 당시 업무를 담당한 상무가 대리 출석한다는 회신을 11월 24일(공문번호 진로 총무 - 0042)통보해 왔음.

○ 그러나, 괴산군수 임각수의 경우 불참사유로 제시한 11월 28일 14시 30분에 개최한 괴산군 농업연구소 준공식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군 자체행사로 일정연기 또는 부단체장 참석이 가능한 사항이며,

- 도의회의 감사일정과 증인의 업무일정을 사전 조율 하고자 하는 노력을 경주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실정임.

○ 또한, (주)진로 대표이사 윤종웅의 경우에도 신제품 “J”출시 행사에 회사관계자의 대리 출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대외 거래처 행사 주관 등의 일정으로 불출석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출석과 관련한 엄정한 기준과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철저한 업무추진을 위해 불출석 증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과태료 부과 요구내용

처분요구 대상자	위반내용	부과 근거	금 액	비 고
임 각 수 괴산군수	지방자치법 제41조제 5항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제1항	200만원	2회 불참
윤종웅(주)진로 대표이사	"	"	100만원	1회 불참

<붙임 2>

관련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 지방의회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한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 법 제41조제5항 및 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또는 조사에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중 당해 감사 또는 조사시 출석거부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과태료 부과

□ 내무부 행정 13030-1505, 1994. 9. 16. 법령질의회시

-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중 “그 사무의 관계되는 자”의 범위에 대한 해석은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을 감시·감독하고 행정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부여된 권한으로서 조사의 실시범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사무가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자치단체 관계 공무원이나 주민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범위는 감사의 실효성 확보라는 취지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이나 주민뿐만 아니라 의회의 조사에 있어서의 그 대상 사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포함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과태료 부과기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부 과 대 상	과 태 료	비 고
1.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 당해 감사 또는 조사시 출석거부 3회 이상	500	
○ 당해 감사 또는 조사시 출석거부 2회	200	
○ 당해 감사 또는 조사시 출석거부 1회	100	
2.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 당해 감사 또는 조사시 증언거부	50	

<붙임 3>

참고 자료

- '08. 10. 14 : 제2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요구의 건 의결
- '08. 10. 30 : 증인출석 요구(의사담당관 - 2176)
- '08. 11. 19 : (주)진로 대표이사 윤종웅 불참 통보(총무 - 08)
- '08. 11. 19 : 괴산군수 임각수 불참 통보(경제과 - 11056)
- '08. 11. 19 : 괴산군수 임각수는 괴산산업단지 절차상 하자 인정 충북도청 기자회견 개최(회견문 붙임)
- '08. 11. 21 : (주)진로대표이사와 괴산군수 재출석 요구(의사담당관- 2429, 2430)
- '08. 11. 24 : (주)진로 대표이사 윤종웅 불참 통보(진 총무 - 080042)
- '08. 11. 26 : 괴산군수 임각수 불참 통보(경제과 - 11905)